

22.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2차 교육위원회(2021년 6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태환)

□ 제안이유

-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제한규정 삭제(안 제5조)
-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(안 제22조)
- 사용(대부)료 감면 대상 및 비율 확대(안 제33조)

- 사용(대부)료 조정 비율 확대(안 제35조)
- 사용(대부)료 분납횟수 최대 연 6회로 확대 및 상위법령상 납부유예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(안 제36조)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용어 정비(안 제31조 및 안 제66조)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9조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,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함)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- 주요 내용으로는
 - ▶ 안 제5조에서, 영 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함
 - ▶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,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무상 사용기간에 대해 규정함
 - ▶ 안 제22조에서,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함
 - ▶ 안 제33조에서, 영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

위해 30% ~ 100%까지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 확대함

- ▶ 안 제35조에서,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간 사용(대부)료가 전년대비 5% 초과 증가분에 대한 감액 비율을 70%에서 100%로 확대함
- ▶ 안 제36조에서, 영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(대부)료 분납횟수를 최대 연 6회로 확대하고 납부유예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
- ▶ 안 제31조 및 안 제66조에서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용어를 정비함
- ▶ 안 제39조에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
○ 검토 결과

- ▶ 본 개정 조례안은,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위법령인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, 관련 법률인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음
- ▶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3조에서 사용료 감면을 단순 50%에서 30% ~ 100%까지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, 안 제35조에서는 연간 사용료가 전년대비 5% 초과 증가분에 대한 감액 비율을 70%에서 100%로 확대하였으며, 안 제36조에서는 사용료 분납횟수를 최대 연 6회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

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였음

- ▶ 아울러, 안 제5조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,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, 관련 법률인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
- ▶ 다만, 법제처의 조례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2조의 재산관리관(학교의 경우, 학교장)의 재량에 따른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만큼,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